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1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3. 5. 20(월) 14: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경재 위 원 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

## 제1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4시 3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박노익 기획총괄담당관

-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15명이 신청하였습니다.

### 2. 국민의례

○ 박노익 기획총괄담당관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이경재 위원장

- 2013년 제1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전차 회의록 확인

○ 이경재 위원장

- 지난 제16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17차·제18차 서면회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2008년 제20차 회의의 속기록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차수의 회의는 인사 관련 사항으로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발언위원, 사무국 보고자의 성명을 음영 처리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 이경제 위원장

- 제17차 및 제18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서면회의 결과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 이경제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 <보고안건 가> '2012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은 방송사업자 평가관련 사항으로 공개로 진행할 경우 낮은 평가를 받은 사업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 안건 중 <보고안건 가>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머지 안건은 공개하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201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추진계획(안)에 관한 건 (2013-19-047)

#### ○ 이경제 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추진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201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추진계획(안)에 관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201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추진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계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라, 201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추진계획을 의결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주요한 경과사항을 말씀드리면 2012년 1월 15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관련 방송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년 4월 13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2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를 금년 3월 19일 국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의 목표는 방송시장에 대한 경쟁 정도를 파악하고 시장지배력 수준을 측정·평가하여 방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에 그 목표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방향은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주관하고, 구체적인 조사·연구, 통계분석 등의 세부사항은 전문 연구기관이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평가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가운데 회계자료는 자료 확보가 가능한 '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방송시장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중점 평가이슈를 선정해서 별도의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코자 합니다. '13년도에 행해질 중점 평가이슈는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유료방송시장에서 유료방송시장의 점유율 변화 요인을 중점 분석토록 하고, 채널거래시장에서 유료방송 플랫폼과 채널 간 방송수신료 배분 현황을 중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단위시장 확정을 하게 됩니다. 단위시장 확정은 서비스 수요에 대한 또는 공급에 대한 대체성을 고려하고, 서비스의 지리적 범위 등을 감안해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경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단위시장 확정에 따라 이후에는 평가에 필요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게 됩니다. 평가지표 개발과 관련해서는 시장구조나 시장성과, 이용자의 대응력 및 사업자 행위와 관련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그 지표를 평가의 척도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표가 개발되면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측정하게 되는데 관련 자료는 「방송산업 실태조사」 및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 공표집」, 기타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측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자료의 수집과 측정을 통해 구체적인 마지막 단계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러한 측정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확정된 단위시장별로 경쟁의 활성화 여부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전문 연구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 연구기관은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과 관련해서는 제안서에 대한 기술적 평가와 입찰가격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 비중은 80:20이 되겠습니다. 제안서 관련 평가는 방통위가 경쟁상황평가 관련 전문가 5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게 되며, 가격 부분의 평가는 조달청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전문연구기관 선정을 6월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10월까지 시장확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12월까지는 그 평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년 3월 금년도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201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추진계획(안)의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최종 보고는 언제지요? 내년이 됩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금년 12월 말까지는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되고 그 전에 10월경에 시장확정(안)을 먼저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어쨌든 방송정책국장이 상당히 오래 담당했기 때문에 방송시장의 급변하는 형편도 잘 알고 또 경쟁상황도 어느 정도 파악하겠지만, 특히 평가지표 개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내용으로 되겠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엄밀하게 국장이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지금 다 아는 것처럼 유료방송시장에서도 IPTV 가입자가 벌써 700만이고 위성TV도 500만 가까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그룹 안에서 신문도 경쟁상황이 평가의 대상이 되지요?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신문 자체적인 것이 방송사업자와 연관이 될 때 평가가 됩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종편 내에서는 평가가 이루어진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런 신문까지 포함해서 미디어 전반이 혁명적인 변화 상황을 캐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기관도 아니고 방통위가 명예를 걸고 만드는 것이다, 그런 생각 하에서 평가지표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예.

○ 양문석 상임위원

-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과정에 있어서 미디어 전문지들이나 관련 연구기관들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부분적으로 제기됐던 연구방법론에 대해 지적했던 것들이 개인적으로 다 기억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 수 없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연구 설계할 때 그동안에 지적됐던 것을 한 번 쪽 모아서 반영할 수 있는 것과 반영할 수 없는 것들을 구분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래서 외부에서 논의됐던 부분에 대해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렴하는 모습들이 이번 과정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아까 '중점 평가이슈'라고 해서 유료방송시장과 채널거래시장을 주로 들었습니다만 아까 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지상파 방송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그러면 나중에 종편의 재허가와 관련해서 그 당시 논란되었던 것이 합산한 영향력 조사 관계가 제기됐는데 그것을 따로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항목을 넣어서 함께 하는 것입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매체영향력의 합산지수 부분은 시장경쟁상황평가와 별도로 하게 됩니다. 시청점유율 조사 차원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종편이나 지상파가 가지는 시장영향력 측정은 됩니다. 이 부분은 주로 시장매출이라는 측면에서 강하게 중점을 많이 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그러니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이 이때 영향력을 조사해서 ABC에서 자료를 받아서 합산하면 별로 힘들지 않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따로 하느냐, 여기에서 항목을 넣어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그 부분은 방송법에 따르면 시청점유율은 시청자 다양성평가위원회 업무와 경쟁상황평가위원회 업무가 구분되어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향력 측면에서 다소 중복적인 측면은 있지만 보는 초점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보완적인 관계는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들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텐데 알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주)광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 관한 건 (2013-19-048)**

○ 이경제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주)광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주)광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 관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주)호반건설이 신청한 (주)광주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을 의결한다입니다. 승인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승인조건입니다. (주)광주방송 경영의 투명성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신청서 및 이행계획서에서 약속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이행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두 번째로 (주)광주방송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주)호반건설

(특수관계자 포함)과 (주)광주방송 간의 내부거래를 금지할 것, 세 번째로 최대액출자자 변경 승인 위반과 관련 방송의 공적책임 구현 등을 위해 의견청취 및 이행계획서에서 약속한 사항을 '13년 6월 30일까지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네 번째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위반과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이사회에 관련 법 위반사실을 보고하고 대책을 '13년 6월 30일까지 마련하여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라 (주)호반건설의 (주)광주방송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변경승인 신청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청개요는 <표>로 보시는 대로 (주)호반건설이 (주)호반건설산업을 흡수합병하여 (주)광주방송의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인의 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주)광주방송의 최대액출자자 주식변동 내용이 <나>의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변경 전에는 (주)호반건설산업을 특수관계자를 포함해서 지분을 39.59%였습니다만 변경 후에는 (주)호반건설이 39.59%를 가지게 됩니다. 그 자세한 특수관계자 내역 부분에 대해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되, 그 변경내용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경과사항을 보고 드리면 '12년 12월 17일 (주)호반건설이 (주)광주방송의 당시 최대액출자자인 (주)호반건설산업을 흡수합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호반건설과 (주)호반건설산업을 방통위의 변경승인 없이 최대액출자자를 (주)호반건설산업을 (주)호반건설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3년 1월 24일 방통위에서는 (주)호반건설에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했고 해당 지분만큼의 의결권 제한을 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2월 15일 변경승인 위반과 관련하여 방통위가 의결한바 있는데 그 의결내용은 향후 변경 신청 승인 시 방송의 공적책임 구현 관련 조건을 부과하기로 의결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13년 2월 6일 (주)호반건설에서는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해 왔고 방통위에서는 5월 3일 전문가 심사와 관련자 의견청취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호반건설의 여러 가지 공적책임 수행을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이 5월 10일 있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전문가 심사단 구성입니다. 방송·회계·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5인으로 심사단을 구성해서 5월 3일 이와 관련된 심사회의를 했습니다. 심사회의를 주요내용은 변경승인 심사사항을 검토했고, 신청인 (주)호반건설과 (주)광주방송에 대한 의견청취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주요 심사항목은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사항과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위반과 관련 방송의 공적책임 구현을 위한 조건 부과방안 등이었습니다. 전문가 심사단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신청인에 대해서 전문가 심사단은 방송의 공적책임,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의 심사항목에 대해서는 변경승인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다만, 광주방송의 경영투명성을 보장토록 하고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위반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상응하는 금전적 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위반과 관련해서는 계열사 간 합병과정에서 법규 미숙지에 따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외 신청인의 방송에 대한 공적책임이나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기여실적 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방송법상의 소유제한이나 외국자본의 출자·출연 금지 등과 같은 방송법상의 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11년 11월 (주)호반건설산업을 (주)광주방송 최대액출자자 최초 변경 승인 시 부과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계획 이행이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내부거래 금지 조건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

는 판단이며, 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위반과 관련 방송의 공적책임 구현 조건 부과에 대해서는 심사단의 심사결과와 '13년 5월 (주)호반건설이 제출한 이행계획서에서 약속한 사항을 반영해서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방송의 공적책임과 관련해서 (주)호반건설이 제출한 이행계획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계획을 제출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광주·전남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재)광주문화방송재단에 1억원을 13년 6월 30일 이내에 출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또 소외계층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광주·전남지역의 비영리공익단체 중 목적에 부합하는 공익단체를 선정하여 5,000만원을 역시 '13년 6월 30일 이내에 기부할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공적책임과 관련된 유사사례 재발 방지제도를 '13년 6월 30일 이내에 마련한다는 계획도 제출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보고 드린 내용을 의결해 주시면 5월 말까지 관련 허가증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전문가 심사단 심사의견과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최다액출자자가 된 것을 방통위가 인지한 것이 어느 시점입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12년 12월 17일 실제로 그 행위를 했고 저희들이 인지한 것은 '13년 1월경입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1월 24일 우리의 액션이 처음 나왔습니다. 한 달 며칠 만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법규 미숙지한 업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자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습이라고 할까, 뒤처리는 깔끔하게 된 것 같은데 차제에 방통위로서도 업무에 관한 전문성, 그리고 과원들의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할까, 치밀한 업무과약에 대해서 자성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행정청으로서 권위가 있고 또 대민업무에서의 신뢰도가 확보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통위에 변호사는 몇 명쯤 있습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사람 정도로 기억합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미래부로 간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5명 이상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지금 회계사는 몇 명이지요?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지금 방송정책국에는 한 사람 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관련해서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인원이 상당히 많이 미래부로 갔기 때문에 남아 있는 우리로서는 전문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도 생각해야겠지만, 있는 과원들끼리 소관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러한 업자들의 부주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체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예, 있었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런데 왜 자꾸 이것이 안 없어지지요?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작은 행정위반하는 신고나 이런 사례가 더러 발생하는데 많은 교육도 시키고 통지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방송사들이 무관심도 있을 수 있고 둘째로 실무자가 계속 바뀝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작은 부분에 대한 숙지가 미흡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혹시 이런 사례가 서울이 아니고 지방에서 자꾸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번에도 지방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지난번에도 지역민방이었고 이번 건도 광주가 맞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 방송위원회 때를 생각해 보면 지방조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방조직에서 그 지방과 관련된 관할에 대한 관리감독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는 현재 지방조직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

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 놓고는 여기는 (주)호반건설인데 (주)호반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 지원을 해서 오히려 자기들 영리적인 곳에 지원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계획만 해서 보내지 말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잠깐만요. 국장 있을 때 제가 앞에 논의한 것 중에 빠뜨린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할 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유료방송시장에 있어서 사전동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쟁상황평가를 할 때 목적의식적으로 현재 연구방법을 설계해야 하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들어오시고 나서 유사보도채널과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유사보도채널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보고 이것이 이후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시장상황들을 첫 번째 하나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PP 매출점유율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쟁점이 됐지 않습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예.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러면 PP 매출점유율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경쟁상황평가의 주요데이터가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 측면, 세 번째 SO 가입가구 제한 법령 개정도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 지점에 있어서도 목적의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책판단의 자료들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지금 스카이라이프나 IPTV 등 KT와 같이 특정사업자가 2개 이상의 플랫폼을 가지고 시장점유율과 매출액들을 높여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배력들이 어떻게 관철되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가 어떻게 들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지금 계속 국회 쪽에서 개정안들 이야기가 나오니까 4가지가 현재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봐주어야 하는 시장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4개를 꼭 봐 달라,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꺼냈다가 전반전만 하고 후반전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일사부재리에 안 걸리게 중간에 끼어 넣었습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중요한 지적 잘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공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7. 보고사항

### 가. 등록대상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제작 역량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 (비공개)

## 8. 기 타

### ○ 이경제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은 없으십니까?

### ○ 양문석 상임위원

- 기타 의견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타 의견을 할 때 마지막 보고하는 국장만 남아 있게 되는데 이후에는 전체회의는 실·국장들은 자기 국의 의제가 없어도 실·국장은 기본 배석을 해야 전체적으로 전체회의 흐름이나 그다음에 상임위원들 간의 소통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길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또 하나는 시장조사 드라이브 통신시장 과열에 대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건이 2개가 있습니다. 번호이동이 24,000개 이상일 때 조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27만원 이상을 썼을 때 조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세 사업자가 다 위반했었을 때 들어가고 이 부분들을 다 1개씩 토막 쳐서 27만원 넘었을 때 들어가고 그다음에 24,000개가 안 넘어가도 27만원 이상 썼을 때 들어가고 1개 사업자가 위반했을 때 들어가고 이래야 주도사업자를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이 하나입니다. 두 번째, 지난번에 우리가 몇 월 며칠까지 기간을 딱 정해 놓고 보도자료 를 뿌렸지 않습니까? 그다음 날부터 3~4일간 동안 계속해서 보조금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빠져 나오면서 보조금이 들어오면서 과열되기 시작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출발시점은 정해 놓고 마지막 마감 시점은 일정하게 보류해 놓고 시장상황들이 안 튀어나가게 잡는 이런 통신시장 과열의 기술적인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 이용자정책국장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기타 안건에서 의제 안 올라오면 이용자정책국장 1년 내내 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장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전 실·국장들은 다 배석을 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께서는 국장 자주 보지만 우리는 생전 불 일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들, 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 ○ 이경제 위원장

-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비공개 회의를 했지만 기타 안건 할 때는 다시 들어오도록, 그래야 지금 양문석 위원의 말이 보도될 수 있는 것은 크게 보도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의 기술적인 문제들은 지난번에 발표할 때 그것이 미리 정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로 보도할 때는 그 당시는 일단 한다는 이야기이고 구체적으로 할 때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기준을 잘 설정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5월 27일 월요일 2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9. 폐 회

### ○ 이경재 위원장

- 이상으로 제1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5시 20분 폐회 】